

복 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1121호 2022. 11. 16. (수)

.....

고 시

제2022-140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422호선, 소로3-43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---2

공 고

제2022-12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---4

공 람	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고 시

○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2-140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422호선, 소로3-43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-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545번지 일원-

1.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-32호(2007.09.12)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,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-103호(2018.09.19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,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98(2019.11.13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507호(2020.12.23)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부산광역시 북구 제2021-79호(2021.07.28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[도시관리계획(사기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함]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북구 제 2022-71(2022.05.11.)호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,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류422호선 및 소로3류43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 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<http://www.eum.go.kr>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북구 건설과(☎ 051-309-4734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2년 11월 16일

부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개요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: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545번지 일원(변경없음)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-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422호선, 소로3-43호선)사업
- 사업의 명칭: 도시계획시설 중로3-422호선(사기마을) 개설공사-2구간

다. 사업의 규모 (변경없음):

도로개설 중로3-422호선(L=220m(총연장:383m), B=13m),

소로3-43호선(L=28m(총연장:75m),B=6m)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
- 사업시행자 성명: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
- 사업시행자 주소: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

마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(변경있음)

- 당초: 2021. 7월 ~ 2022. 12월
- 변경: 2021. 7월 ~ 2024. 6. 30.(증 18개월)

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자 조서 : 변경없음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자 조서 : 변경없음

자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- 상기 실시계획인가시설(도로)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와 같음.

차. 관계도면: 게재 생략(위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)

**바. 변경사유 :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절차 이행 및 보상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사업
기간 연장**

공 고

○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2-1228호

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6일

부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을 활성화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(안 제3조)

나. 지도·감독 등(안 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문화체육과, 전화 309-4124, 팩스 309-406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생활체육단체”를 각각 “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)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제4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<u>생활체육단체</u>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생활체육단체</u>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·개정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지도·감독 등) ① ----- -----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----- -----.</p> <p>② <u>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</u>----- ----- ----- -.</p>

입법예고 의견서

자치법규명: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(안) 내용	의 건	비 고